



협회 일보



제 830 호

2024.6.5.(수)

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

◇ 중소기업 관련 부담금 감면대상이 연간 매출액 1,000억원 까지 확대

지난 6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이 개정·공포되었습니다.

금번 시행령 개정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「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」의 후속조치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 원 미만에서 1,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우리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거의 모든 업체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편 금번 시행령은 7.1(목)부터 시행되며 '25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.

<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 주요 내용 >

□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구간 확대(제33조 및 [별표4])

○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구간(매출액) 확대

현행			개정·공포법령		
감면구간(매출액)	감면율(%)	대상업체	감면구간(매출액)	감면율(%)	대상업체
10억 미만	100	49개사(8.2%)	10억 미만	100	49개사(8.2%)
10억 ~ 50억 미만	90	274개사(45.7%)	10억 ~ 50억 미만	90	274개사(45.7%)
50억 ~ 100억 미만	80	154개사(25.7%)	50억 ~ 100억 미만	80	154개사(25.7%)
100억 ~ 200억 미만	70	69개사(11.5%)	100억 ~ 200억 미만	70	69개사(11.5%)
200억 ~ 400억 미만	60	36개사(6%)	200억 ~ 400억 미만	60	36개사(6%)
400억 ~ 600억 미만	50	7개사(1.2%)	400억 ~ 600억 미만	50	7개사(1.2%)
			600억 ~ 1,000억 미만	50	7개사(1.2%)

□ 시행일 : '24.7.1

○ 다만,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은 '25년도 납부분부터 적용